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가단1514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2. 9. 22.

판결 선고2022. 10. 1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165,8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65,8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5. 11. 8.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1,1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연 7.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D는 E에 대해 F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20. E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24.경 F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65936호 양수금 사건에서 F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채권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F와 D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7,455,849원 및 그 중 2,160,0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18. 11. 26.자 지급명령이 2018. 11. 7. D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1. 22.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7. 8.경 F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2021. 11. 18.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오토-신차	2,160,010원	5,683,575원	1,322,281원	9,165,866원
-------	------------	------------	------------	------------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화성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화성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I은 2019. 7. 27.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D, J, K, L이 있었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9. 23.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24.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20. 1. 3. 소외 M에게 거래가액 9,500만 원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분 외에 서울 금천구 N 임야 514㎡ 중 지분 6,752분의 3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년 개별공시지가(1,418,000원/㎡)에 따른 위 임야의 지분가액은 3,238,382원(= 514㎡ × 1,418,000원/㎡ × 지분 30/6,752)인 반면, D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대한민국(국세청)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D 상속분의 가액 상당인 17,272,727원에 관하여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에서 피고의 Q은행 예금채권 약 13,090,000원을 압류함에 따라 D의 상속분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다투는 본안전항변으로 이해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P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D의 상속분 가액 상당의 금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P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7877호 및 같은 법원 2020머52820호), 위 조정에 따라 피고는 2020. 8. 20.경 P에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대한민국(소관청: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12. 3.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Q은행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7,272,72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5041호)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P에 가액의 회복을 마친 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P 사이의 조정에 따라 가액이 회복된 부분과 중첩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가액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Q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기하여 가액의 반환까지 마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서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D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사해의사도 추인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은 2020. 10. 26.경 소외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J은 2020.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고와 M 사이의 거래가액인 9,500만 원으로 추인되므로,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 상당의 가액은 17,272,727원($= 95,000,000\text{원} \times 2/11$,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데, 위 공동담보가액에서 피고가 P에 지급함으로써 가액의 회복을 마친 5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나머지가 12,272,727원($= 17,272,727\text{원} - 5,000,000\text{원}$)으로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액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21. 11. 18. 기준 원리금 액수 9,165,866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9,165,86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9,165,8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윤한

별지